

#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443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19년 2월 1일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교육감

## 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형 통합운영학교 도입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- 나. 학부모와 학생의 의견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(대통령령 제28516호, 2017.12.29., 일부개정) 제59조의4제1항 및 제2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, 학교장이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한 안건의 경우에는 의견수렴을 생략할 수 있는 단서를 신설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가. 통합운영학교의 운영위원회 통합·운영 근거 마련(안 제2조제4항 신설)
- 나.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학부모 및 학생 대표 등의 의견을 수렴·청취하여야 하는 심의 사항 확대(안 제11조제2항 및 제3항)
- 다. 학교장이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한 안건의 경우에는 의견수렴을 생략할 수 있는 근거 마련(안 제11조제2항 단서 신설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규: 별첨 6
  -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30조(학교의 통합·운영), 제32조(기능)
  -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56조(학교의 통합운영), 제59조(위원의 선출 등), 제59조의4(의견수렴 등)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(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, 별첨 2)

다. 협의 : 감사관, 정책·안전기획관과 협의완료

라. 기타

○ 신·구조문 대비표: 별첨 1

○ 입법예고(2018.11.21.~12.11.) 결과: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별첨 3

○ 부패영향평가: 해당 없음(별첨 4)

○ 성별영향분석평가: 해당 없음(별첨 5)

##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학교를 통합·운영하는 학교는 운영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제10조제1항 중 “영 제59조제5항” 을 “영 제59조제6항” 으로 한다

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영 제59조의4제1항에 따라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” 을 “운영위원회는 영 제59조의4제1항에 해당하는” 으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운영위원회는 학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한 안건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.

제11조제3항 중 “학생의 학교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” 을 “영 제59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” 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**【별첨 2】**

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제3조 관련)

**1. 비용발생 요인**

- 해당 없음

**2. 미첨부 근거 규정**

- 「서울특별시교육청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‘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’ 에 해당

**3. 미첨부 사유**

- 서울형 통합운영학교의 운영위원회 통합운영 근거 마련 및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사항 중 학부모 및 학생 대표 등의 의견을 수렴·청취하여야 하는 심의 사항 확대를 위한 개정으로 이로 인한 비용 발생 없음

**4. 작성자**

- 서울특별시교육청 참여협력담당관 주무관 조혜연(02-3999-472)

【별첨 3】

입법예고 결과 요약서(제14조 관련)		
의견제출자	제 출 의 건	조 치 내 용
	해당 없음	

【별첨 4】

##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

자치법규명	서울특별시립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	
평가담당	감사관	행정6급	박동환
입안주관부서	참여협력담당관	통보일	2018. 12. 18.
관련조문	<b>평가결과</b>		<b>조치사항</b>
제2조 제10조~제11조	<p>상위법령인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개정(2017.12.29. 일부개정)에 따라 종전 규정보다 학부모 및 학생 대표 등의 의견을 수렴·청취하여야 하는 심의사항을 확대하였고, 학교장이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한 안건의 경우에는 의견 수렴을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등 법령 기준 및 운영 실정에 맞게 정비하거나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여 규정을 개정함</p> <p>⇒ 부패유발요인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<u>“원안동의”</u> 함</p>		<u>“원안동의”</u>

**【별첨 5】**

<b>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통보 확인서</b>				
관리번호	2018A서울교육023			
정책명	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		
소관부서	기관명	서울특별시교육청		
	부서명	참여협력담당관		
	담당자명	조혜연	전화번호	02-399-9472
담당부서	기관명	서울특별시교육청		
	부서명	정책안전기획관		
	담당자명	박혜주	전화번호	02-3999-315
체크리스트 제출일자	2018년 11월 29일			
완료(제외) 통보일자	2018년 11월 29일			
<p>해당 과제는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대상에 해당되어 제출된 체크리스트만으로 성별영향평가 절차가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18년 12월 03일</p>				



## 【별첨 6】

### 관계법규

#### ■ 초·중등교육법

제30조(학교의 통합·운영) ① 학교의 설립자·경영자는 효율적인 학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역 실정에 따라 초등학교·중학교, 중학교·고등학교 또는 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의 시설·설비 및 교원 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.  
[전문개정 2012. 3. 21.]

제32조(기능) ① 국립·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
2.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
3.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
4.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
5. 교복·체육복·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
6.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
7. 「교육공무원법」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, 임용, 평가 등
8. 「교육공무원법」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
9.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·운용 및 사용
10. 학교급식
11.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
12. 학교운동부의 구성·운영
13.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
14. 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시·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

② 사립학교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(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은 제외한다)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. 다만,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이나 학교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자문한다.

③ 학교운영위원회는 제33조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·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[전문개정 2012. 3. 21.]

## ■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

제56조(학교의 통합운영) ① 학교의 설립·경영자는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를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의 규모, 학생의 통학거리 및 당해 통합운영대상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주민의 의사 등 교육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.

② 통합운영학교의 시설·설비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③ 통합운영학교에는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배치기준에도 불구하고 통합운영되는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직원을 배치할 수 있으며, 학교의 설립·경영자는 학교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직원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0. 12. 27., 2013. 2. 15.>

④ 제3항에 따른 교직원 배치기준, 교육과정의 운영, 예산 편성·운영, 행정적·재정적 지원, 사무관리나 그 밖에 통합운영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할청이 정한다. <개정 2010. 12. 27.>

[제목개정 2013. 2. 15.]

제59조(위원의 선출 등) ① 국·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.

②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한다.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, 우편투표 등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. <개정 2015. 9. 15.>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규모·시설 등을 고려하여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위원을 선출하기 곤란하다고 위원회규정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. <신설 2015. 9. 15.>

④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중에서 선출하되,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. <개정 2000. 2. 28., 2015. 9. 15.>

⑤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. <개정 2015. 9. 15.>

⑥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,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. <개정 2015. 9. 15.>

⑦ 국·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·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.  
<신설 2011. 3. 18., 2015. 9. 15.>

**제59조의4(의견 수렴 등)** ① 국·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려는 경우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,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·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 12. 29.>

1. 법 제32조제1호, 제5호, 제6호, 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사항
2. 그 밖에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,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·도의 조례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정한 사항

② 국·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. <개정 2017. 12. 29.>

1. 법 제32조제1호, 제6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사항
2.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

③ 국·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,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·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하게 할 수 있다.[본조신설 2011. 3. 18.]